

속초시초지조성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5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3. 5. . .

제 출 자 : 속 초 시 장

1. 제 안 사 유

- 초지법이 개정되어 위원회에 관한 사항중 일부조항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2 주 요 골 자

-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통지기일 변경 (안 제6조 참조)
각 위원에게 개최 "7 일전" 에서 "10 일전" 으로 개정

3. 참 고 사 항

- 강원도 법무 02124 ~ 98 호('93. 3. 24) 로 정비안 시달 ————— 별 첨
- 시정조정위원회 부의 ————— '93. 4. 29

속초시 조례 제 호

속초시초지조성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

속초시초지조성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중 "7 일전까지" 를 "10 일전까지" 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○ 신.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6조(회의) ① 생략		제6조 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개최 <u>7일전</u>		② ----- <u>10일전</u>		
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		-----		
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		-----		
하지 아니한다.		----- 한다		
③ 생략		③ (현행과 같음)		